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행정주사·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”를 “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행정사무관·임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본문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4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5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단서 중 “임용한다”를 “임용하고, 그 밖의 정원 중 1명(4급 또는 연구관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다음에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”을 신설하고,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2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“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”를 신설하며,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다음에 “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다음에 “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

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”를 삭제하며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”를 삭제하고, “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5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다음에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”을 신설하고,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2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”를 신설하며,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다음에 “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”를 삭제하며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”를 삭제하고, “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6 서기관 1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”을 신설하고,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

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”를 삭제한다.

별표 8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8의2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0 일반직 계 27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”를 신설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5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”를 신설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9 일반직 계 4 다음에 “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또는 학 예연구관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--- -----.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법무감 사담당관 · 정보화담당관 및 디 지털문화유산팀을 두며, 각 담 당관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기 술서기관</u> 또는 학예연구관으로, 팀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행정사무관</u> · <u>임업사무관</u> 또는 <u>시설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 관</u> · <u>서기관</u>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임업사무관</u> · <u>시설사무관</u> 또 는 <u>행정사무관</u>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 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 기관</u>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 다.	제5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----- --.
제6조(문화재정책국) ① (생 략)	제6조(문화재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재정책국에 정책총괄과 · 무형문화재과 · 발굴제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두되, 각 과장	② ----- ----- -----

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 (생략)

② 문화재보존국에 보존정책과
· 고도보존육성과 · 유형문화재과 · 천연기념물과 및 수리기술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(생략)

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
· 국제협력과 · 근대문화재과 · 세계유산정책과 및 문화유산협력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9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한

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
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--

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, 총무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, 각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0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, 각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국립고궁박물관) ① (생략)

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·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,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국립고궁박물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
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5조(현충사관리소) ① 현충사
관리소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
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
다.

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
및 관리과를 두되, 기획운영과
장은 행정사무관으로, 관리과장
은 행정사무관·임업사무관·
시설사무관·행정주사·임업주
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8조(칠백의총관리소) ① 칠백의
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·공
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
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
다. 다만, 칠백의총관리소장은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
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
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
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
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현충사관리소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
기관 -----
--.

② -----

-- 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
행정사무관·임업주사·시설주
사 또는 행정주사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칠백의총관리소) ① ----
----- 공업사무관·임업
사무관·시설사무관·행정사무
관 -----
--.
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임업
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만인의총관리소)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제20조의2(국립무형유산원) ① (생략)

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 · 전승지원과 · 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,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,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0조의4(지방문화재연구소) ① (생략)

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, 소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20조의5(문화재보존과학센터)

제18조의2(만인의총관리소) ① -----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행정사무관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국립무형유산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으로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4(지방문화재연구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5(문화재보존과학센터)

① (생략)

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, 센터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

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,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(7급 1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④ 삭제

⑤ ~ ⑭ (생략)

제23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
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과학
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. -----

----- 임용하고, 그 밖
의 정원 중 1명(4급 또는 연구
관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
용할 수 있다.

⑤ ~ ⑭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u>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</u> <u>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</u> <u>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</u> <u>보할 수 있다.</u> 제25조(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 추진단)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 추진단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	제25조(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 추진단) ① ----- ----- <u>과</u> <u>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6</u>	+6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6</u>	<u><삭 제></u>	-6
·	·	·	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10</u>	+10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3</u>	+13
<u>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13</u>	<u><삭 제></u>	-13
<u>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의2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· · <u><신 설></u>	· · <u>6</u>	+6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6</u>	<u><삭 제></u>	-6
· 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· <u><신 설></u>	· <u>1</u>	+1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10</u>	+10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3</u>	+13
<u>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사무관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13</u>	<u><삭 제></u>	-13
<u>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]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행정사무관</u>	• • <u><신 설></u>	• • <u>1</u>	+1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</u> <u>사무관 · 임업사무관 또는</u> <u>시설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3</u>	+3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</u> <u>행정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</u> <u>관 ·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<u>3</u>	<u><삭 제></u>	-3
• •	• •	• •	

[별표 8]

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3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• • <u><신 설></u>	• • <u>1</u>	+1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 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 • •	<u>1</u> • •	<u><삭 제></u> • •	-1

[별표 8의2]

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3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 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	• • <u><신 설></u>	• • <u>1</u>	+1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 관·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 • •	<u>1</u> • •	<u><삭 제></u> • •	-1

[별표 10]

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5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또는 학예연구관</u>			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학예연구관</u>			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5]

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</u> <u>학예연구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5의2]

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학예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</u> <u>학예연구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9]

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25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또는 학예연구관</u>			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학예연구관</u>			
·	·	·	
·	·	·	